

수사실무 및 법과학 지침서로서 「欽欽新書」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김은기*, 조현빈**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Eun-kee Kim(eunkee@dongguk.edu)*, Hyun-bin Jo(johyunbin@korea.com)**

요약

欽欽新書에 관해 법률서로서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실무 및 법과학 서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의 관념과 합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통해 현대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언어적 단서 뿐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당대의 과학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흙흙신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용적”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하고 “濫故知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흙흙신서 | 범죄수사 | 과학수사 | 수사실무 |

Abstract

There are so many study on Heumheum Sinseo as a lawbook. But the study on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is uncommon. S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value of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In Heumheum Sinseo, we could find the basic ideology of a sense of justice on humanitarianism and rationalism, and democratic thoughts on criminal law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peedy investigation clause and Limiting the admissibility of the confession. And so many scientific method on crime investigation are described in Heumheum Sinseo.

We expect that this study serve as moment for us to be able to find it have ‘practical’ value to us.

■ keyword : | Heumheum Sinseo | Crime Investigation | Forensic Science | Investigation Practice |

I. 서론

다산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저서들만큼이나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實學者)

인 다산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현대에 재생산 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欽欽新書』는 법률서로서의 가치는 물론 법과학적 서적으로서의 가치와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그간 법률서로서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6년 03월 18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14일

교신저자 : 조현빈, e-mail : johyunbin@korea.com

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법과학적 서적으로서의 가치와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학”을 서구문명의 전유물로만 파악하거나, 과학과 실무에 있어서는 서양이 앞선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 수사의 대명사인 런던 Baker家の 설록 홈즈(Sherlock Holmes)와 그의 친구 왓슨(Watson) 박사는 추리소설 작가인 아더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에 의해 1887년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도일(Doyle)은 당대의 법과학자들도 예견하지 못했던 미래의 과학 수사적 혹은 법과학적 기법을 그의 소설 속에서 구사하였다. 또 근대 법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몽 로카르(Edmond Locard)가 프랑스 리옹(Lyon) 경찰청에 범죄수사학연구소(Institute of Criminalistics)를 만든 것은 20세기 초인 1910년이였다.

하지만, 1822년 간행된 다산의 『欽欽新書』는 서양에서 설록 홈즈(Sherlock Holmes)가 등장하기 60여 년 전 이미 과학적 수사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사례와 판례분석을 통해 그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다산의 『欽欽新書』에 나타난 범죄수사 기법은 현대의 수사기법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II. 흠흠신서에 관한 일반론

1. 흠흠신서에 관한 개관

1.1 흠흠신서 편찬의 의의

30권 10책으로 이루어진 다산 정약용의 『欽欽新書』는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또한 살인 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법의학·사실 인정학·법해석학을 포함하는 일종의 종합 재판적 저술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이 『흠흠신서』를 저술하던 18세기 이후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규범적 질서의식의 파괴 및 농

민들의 생활난,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시기였다. 다산은 정조(正祖)와 함께 개혁정치를 꾀하지만 1800년 정조의 사망으로 그의 국가개혁의지는 좌절되게 된다. 더욱이 1801년 신유사화(辛酉士禍)를 계기로 형조참의의 직을 박탈당하고 17여 년간의 긴 유배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개혁에 대한 그의 고민은 유배생활에서도 계속되었고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의 학문을 마무리하여 실학사상을 집대성 하게 되는데 그 산물이 바로 ‘일표이서(一表二書)’라 불리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牧民心書)』·『흠흠신서(欽欽新書)』의 완성이었다[1].

다산은 서문(序文)에서 『흠흠신서』의 편찬목적에 관해 서술하면서[2],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하늘을 대신하여 가진 목민관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겨 살림과 죽임의 지극히 중요한 대목에서 생명에 관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고 있다고 지적하고[1], 인명(人命)을 다루는 형사(刑事)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의도에서 『흠흠신서』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산은 결실을 보지 못한 국가개혁의 의지를 이러한 저술을 통해 완성시키고자 하였으며, 당시 형사정책의 개선이 정조의 큰 정치적 과제였다는 점과 유배 전 그의 마지막 관직이 형조참의라는 점은 다산의 『흠흠신서』 편찬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1.2 흠흠신서의 구성 및 내용

다음 [표 1]은 강해종의 연구[3]에서 제시한 ‘『흠흠신서』의 체제’를 재구성 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흠흠신서의 체계

경사요의 (經史要義)	총 3권. 유교경전을 바탕으로 13개의 형사정책에 관한 기본이념 및 자신의 의견을 담아 정리하고, 이와 관련 있는 정사(正史), 야사(野史)에서 폭 넓게 선별 하여 중국 사례 79건과 조선의 사례 38건 등 117건을 수록하였다.
비상준초 (批詳憲抄)	총 5권. 70건의 모범이 되는 중국의 인명사건에 관한 형사 공문서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비평하였다.
의율차례 (擬律差例)	총 4권. 청률조례(淸律條例)의 부록으로 실린 독무(醫撫)의 상서(詳書)와 형부(刑部)의 복심(覆審)사건 중 188건의 중국 사례를 2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법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비평하였다.
상형추의 (詳刑追義)	총 15권. 우리나라의 사례를 상형고(詳刑考)에서 144건 골라, 사건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논하였다.
전발지사 (剪賊之詞)	총 3권. 정약용이 현직시절 해결한 사건과 법률을 논한 사례. 유배시절에 접한 사례 16건과 굴검법(掘檢法)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담은 사례 1건 등 총 17건을 수록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흠흠신서』의 구성은 총 5부(部)로서, 형사에 관한 대의를 밝히고 전거가 되는 사례로는 중국과 한국의 판례, 개인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각 부의 구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판례의 서술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① 사건의 원인과 결과, ② 사건개요, ③ 사건해결의 과정, ④ 사건처리 결과, ⑤ 정약용의 평(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다산이 직접 해결한 사건과 유배시절에 접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전발지사(剪跋之詞)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타 부(部)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례들에 관하여서는 ③ 사건해결 과정과 ⑤ 정약용의 평(評)을 중심으로 다산의 수사(搜查)상 지도 원리와 기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현대의 범죄수사

2.1 수사(搜查)의 의미

수사는 학문의 영역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먼저 범죄학의 영역에서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란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 또는 그와 관련된 심리상태를 재구성하는 데 관련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합법적 탐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미확인 사실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사후조사에서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4].

이에 반해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수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과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保全)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5].

2.2 수사(搜查)의 기본이념과 지도원리

오늘날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양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은 실제적 진실주의,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의 원리,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리, 필요최소한도의 원리, 합리성의

원리 등을 지도 원리로 하여 수사상 양대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와 형벌은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형식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 실제적 진실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부인 또는 입증에 구애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이념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활동에는 인간능력에 의한 한계와 제도에 의한 한계, 국가·사회·개인적 이익과 충돌로 인한 한계, 타(他) 지도이념과의 충돌로 인한 한계 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적법절차의 원리란 정의의 관념에 합치하는 법절차를 말하며, 문명사회에서 인정하는 고상한 예의와 공정에 관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실정법상의 형식적 구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이며 합리적인 것을 의미한다[4].

무죄추정의 원리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리이다. 현대의 수사경찰에게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신구속의 제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4].

또 수사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인권 제한적 처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가 필요최소한도의 원리이다.

수사는 과학이나 사회통념,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순 없이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수사목적에 진실의 발견에 있음은 말할 나위 없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언제나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진실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과학의 힘은 절대적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는 범인임을 입증함과 아울러 진범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도록 확고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자백을 받아야 하며, 육감적 방법이나 미신적 방법을 지양하고 과학수사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4].

2.3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의의 및 분류

현대 범죄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법과학(Forensic Science)라고 할 수 있다. 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상거래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장소였다가 근래 들어 공개토론회의나 법정, 재판소의 의미로 통용하고 있다. 현재 Forensic은 사전적 의미로 ‘법정 변론을 위한’, ‘토론의’ 등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Forensic science의 사전적 의미는 법정변론을 위하여 이용되는 과학, 즉 법정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6].

법과학의 기원은 멀게는 비중의 원리를 이용하여 왕관에 은이 섞여있음을 찾아낸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해 의학과 곤충학을 이용한 사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송(宋代)의 송자(宋慈)가 1248년 집필한 『세원록』(洗冤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송자(宋慈)는 낮으로 살해당한 사람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죽은 동물의 시체에 용의자들이 가져온 낮으로 다양한 각도로 테스트를 한 후 피해자의 상처와 비교하였으며, 피 뱀새를 맡고 날아온 파리가 하나의 낮에만 꼬이는 것을 보고 범인을 특정하였다고 한다[7].

16세기 서구에서는 대학과 군의관들이 사망의 형태와 원인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는 외과의사인 Fidelis와 Zacchia가 내부기관의 손상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Fidelis는 익사체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 살인, 사고로 인한 익사의 경우에 갖는 특징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Zacchia는 자타살의 구분, 질식사의 특징, 총탄과 찢린 상처에 대한 특징들에 관해 연구하였다[8]. 하지만, 서구에서도 현대적 의미에서의 법과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점은 19세기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9].

법과학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법과학은 범죄에 해당하는 개개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국가마다 분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법과학은 대체로 크게는 법의학과 협

의의 법과학으로 분류한다. 법의학은 사인규명 등에 관한 학문으로 사망원인, 흉기와 손상과의 관계 그리고 백골화 사체의 감정 등의 항목을 취급한다. 또 법의학은 변사사건에서 시체부검 등으로 의학적 증명을 하는 법의 병리학 분야와 범죄에 관한 심리적·정신의학적 분야를 다루는 법의정신의학 분야로 나누어진다[6].

그리고 협의의 법과학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법의학 외의 분야로, 보통 법과학이나 범죄감식과학이라 부른다. 법과학(또는 범죄감식과학)은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활용하는 분야로써, 주로 분석대상인 증거물을 기준으로 법생물학, 법화학, 법이공학, 기타 특수기술분야 등으로 분류된다[6].

III.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산의 수사관(搜查觀)

1. 수사에 관한 다산의 기본이념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념은 인도주의(人道主義)에 입각한 정의(正義) 관념과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의 인도주의적 정의 관념은 다음과 같이 『흠흠신서』 경사요의(經史要義)편에 서술한 내용에 잘 드러난다.

“형사사건의 처리 기본은 흠흠에 있다. 흠흠이란 그 사건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 사람을 가련히 여기라는 뜻이다. 『서경(書經)』 제전(帝典)에 이르기를 과실과 불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범죄를 풀어주어 사면해 줄 수 있고, 확신범이나 재범은 극형의 형벌로 처벌하되, 공경스럽고 조심스럽게 하여 공훈의 정신으로 형벌을 내려야 한다”[2].

또한 “그리고 또한 형사 사건 처리 방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되, 조금도 융통성이 없으면 안된다. 더러 법률에 해당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고훈(古訓)·고사(古事)를 인용하여 참작하는 자료로 삼아야 하니...(후략)”[2]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입법의 불비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경계하고 합리적 이성을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수사에 관한 다산의 이념은 『흠흠신서』의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2. 수사에 관한 다산의 지도원리

인도주의적 정의관념과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다산은 수사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지도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흠휼신서』 경사요의(經史要義)편에서 다산은 “약용이 살피 보건데, 사건의 판결이란 천하의 저울이다. 죄수를 위하여 죽일 길을 찾아도 형평이 아니며, 죄수를 위하여 살릴 길을 찾아도 형평이 아니다. 그러나 살길을 찾고 죽일 길을 찾지 아니함은 진실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살려놓고 그 죽일 것을 찾아내더라도 오히려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죽여 놓고 살리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형사 사건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죄수를 위하여 살리기를 찾아야 한다.”[2] 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형평을 위하여 유·무죄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완벽한 증거가 발견되어 완벽히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무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대적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현대의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산은 인권보호와 신속한 처벌을 위해 수사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근세에 와서 폭행 치사 사건을 오래 감금해 두고 판결하지 아니하여 더러는 10년 또는 24년이 되기도 하니,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오래 감금함으로써 그 생명을 갓게 함은 오히려 옳다고 하겠으나 마땅히 살려야 할 자를 하급 관리의 태만으로 옥중에서 늙어 비틀어지게 하면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벼슬자리에 있는 자로서 더러 범죄에 의문이 있어 살려 줄 만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마땅히 화산지상(火山之象)을 생각하여 빨리 판결하고 빨리 석방함을 마치 불속이나 물속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처럼 하고 게을리 할 수 없다[2].”

또한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 봉건시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백과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었다[7].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는 고문도 서슴지 않았으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기도 하였다. 다산 역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수사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살피보건데, 고문을 두려워하여 거짓 자백하는 자를 나도 또한 여러 차례 보았다. 백성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으니 잘 살피야 할 것이다.”[2] 라는 기술로 자백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V.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다산의 수사기법

1. 진술의 청취와 신문기법

현대의 수사에 있어서도 피의자나 목격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들의 신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방법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부터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언이나 유죄의 증거가 되는 증거 등을 얻지 못한다면, 중대한 범죄사건의 대부분은 그 해결의 길이 막힌 채 미제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다[10].

다산은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수사 주체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채침에 이르기를, 진술이 사실이 아니면 반드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진술을 듣는 요체는 반드시 그 차이를 살피야 한다. ‘따르지 않으려다 따르다’ 함은 진술을 들음에 편견(偏見)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중략)...여러 사람이 검토해 보아야...(후략)”[2]

또한 신문(訊問)기법에 관하여는 “정현이 이르기를, 그 진술하는 말을 살피볼 때 정직하지 않은 경우 번거롭고, 그 얼굴빛을 살피볼 때 정직하지 못한 경우 얼굴이 붉어지고, 그 숨소리를 살피볼 때 정직하지 못한 경우 헛갈려 어지러워하고, 그 눈동자를 살피볼 때 정직하지 못한 경우 눈에 정기가 없어진다고 했다.”[2]라고 하여 언어적 단서(verbal cues)인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진술자의 비언어적인 행동단서들(non-verbal behavioural cues) 또한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 “기색(氣色)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 사건을 그릇 처리하게 된다.”[2]라고 하면

서 기색만을 살핌으로 인해 선입견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기도 한다.

Depaulo와 Morris의 속임수와 기만을 구별해 내는 행동단서에 관한 연구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적 특징으로 불편함, 긴장감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다고 한다[11].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리거나, 조사관에게서 되도록 거리를 유지하려고 먼 쪽으로 기대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관과의 사이에 인공적인 장애물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머리를 끌어 올린다거나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짓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행동 단서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12].

2. 흠흠신서에 나타난 법과학적 수사기법

흠흠신서에는 당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사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사망원인, 흉기와 손상간의 관계, 백골화 사체의 감정 등 사망원인에 관한 수사 사례, 오늘날의 범독성학, 범식물학 관련 사례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사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사는 현대 법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어떤 외상이나 내부기관의 손상이 사망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요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3].

다산은 사망의 원인을 두고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시체 검험서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다.

“(전략)...또 시체 검험서를 살펴보다라도 왼쪽 복사뼈 밑의 칼날로 다친 곳은 한 구멍의 길이가 1촌 3푼이요, 그 깊이는 9푼이며, 그 주위는 약간 딱딱하고 고름과 피로 구멍이 막혔으니, 이를 붙잡아 말한다면 칼을 다룬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오되, 이곳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시체 앞면의 왼발 정강이, 왼쪽 발목, 왼쪽 발등의 다쳐서 끼진 곳과, 뒷면의 무릎 관절, 왼발 복사뼈, 왼쪽 발등의 다쳐서 끼진 곳 등 모두 여섯 구멍은 크거나 작거나 깊거나 얕은데 모두 주위가 약간 딱딱하고 고름과 피가 구멍을 막았으니, 이른바 칼에 다친 한 구멍과 매우 같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모두를 민성주가 찌른 것이겠습니까..(후략)”[14].

2.2 흉기와 손상간의 관계

이사정(李士禎)의 살인 사건에 대한 건의에서 다산은 “살인 사건은 다친 자죽을 증거로 하고...(중략)...사건 현장의 위하(爲何)와 다친자죽, 얼굴빛, 다친자죽의 길이, 어느 곳이 왼편으로 치우쳤나 오른편으로 치우쳤나, 살갓이 터졌거나 뼈가 부러졌나와...(중략)...칼·주먹·발·벽돌·몽둥이 같은 것에 의해 죽게 되었거나 죽게 되지 않은 것을 분석하고, 그것이 다친 자죽과 서로 합치하나를 살펴 검험이 사실로 확인되고...(후략)”[2]라고 하여 신체의 손상과 흉기의 일치 여부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2.3 백골화 사체의 감정

백골화 사체의 감정에 관한 다산의 견해는 『흠흠신서』 전발지사(剪跋之詞)편 “시체를 파내 검험하는 방법이 되풀이하여 밝힌 하교(下教)에 대한 발문(跋文)”에 서술되어 있다. “오늘 이전에 이미 묻은 것은 하교의 명령을 펴기 전이니 일체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는 헛수가 오래 되었으나 오히려 시체를 파내 검험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도 또한 가벼이 스스로 관을 열고 검험하지 말고 반드시 장계로 아뢰 뒤엔 시행하도록 하라.”는 정조(正祖)의 하교에 대해, 다산은 그의 발문(跋文)에서 “무릇 숨겨 묻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 관아에 아뢰지 말고 곧바로 그 고을에서 시각을 다투어 관을 열어 검험해야 아마도 형사 사건 처리에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백골화 사체의 검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4].

또 비상준초(批詳寫抄) 편에서 “남자의 해골은 8편이나 여자는 6편이며 남자는 좌우 갈비뼈가 각기 12줄이나 여자는 또 각기 14줄이며, 남자는 양수미(兩手肘),

양견인(兩廉肋)에 모두 비골(髀骨)이 있으나 여자는 비골이 없으며, 남자의 미저골(尾骶骨)에는 9구멍이 있으나 여자는 6구멍밖에 없으니, 이는 남녀 골격이 명백히 틀리는 것입니다.”[2]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백골화 사체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다산의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수준으로는 백골화 사체의 감정에 한계가 존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4 법독성학 관련 사례

법독성학이란 약물과 독물, 그리고 다른 독성 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인간의 생체 기관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에 관하여 다루는 것으로 화학과 생리학의 결합이라고 정의된다. 법독성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과학의 한 분야이지만, 최초의 독성학적 실험은 1775년 스웨덴의 화학자인 Karl Wilhelm Scheele가 비소가 의심스러운 사망사건에서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15].

조선시대에는 독살이 의심되는 경우는 주로 은비너를 사망자의 입속에 넣어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입속에 쌀을 넣어 두었다가 닭에게 먹여 독살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당대에 독살의 재료로 사용되던 비상에 포함되어 있는 황성분이 은과 반응하는 경우 검게 변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화학적 실험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경험적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으로써 과학적인 수사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독살에 관한 전형적인 수사 사례는 『흙흙신서』에서도 은비너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5 법식물학 관련 사례

법식물학이란 범죄수사에 잎, 씨앗, 열매 등 식물학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의 특정, 피해자와의 접촉여부 등을 결정짓는 과정에 관한 학문이다. 즉 식물을 이용하여 유·무죄를 결정짓는 데 기여하는 학문을 법식물학이라고 한다.

서구에서 유죄판결에 법식물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첫 사례로는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 목재와 범인의

거주지 다락방의 마루 목재가 일치함을 입증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린드버그(Lindberg) 유괴사건을 들 수 있다[16]. 다산의 『흙흙신서』에서도 식물을 이용한 범죄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주우가 들고 곧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같이 웃으며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밀히...(중략)...입과 눈에 버 꺼끄러기가 있음을 보고 가만히 성문지기에 ‘누가 벗짚을 지고 입성(入城)했느냐?’ 하고 물으니...(후략)...”[2].

“중국 명나라의 주신이 절강 안찰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집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며 이상한 나뭇잎이 앞으로 날아왔다. 좌우에서는 ‘성중(城中)에는 이 나무가 없고, 한 절간에만 있는데 성에서 거리가 멀니다.’라고 했다...(후략)...”[14].

첫 번째 사례는 사체에 버 꺼끄러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벗짚을 지고 성으로 들어온 자를 특정한 사례이며, 두 번째 사례는 다소 설화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식물의 잎으로 범인의 거주지를 특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IV.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다산의 수사기법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 갖는 두려움만큼이나 범죄에 대해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TV, 신문, 영화 등 미디어 매체들 역시 그들이 가진 자원의 많은 부분을 범죄문제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 또한 대중들의 범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얼마 전 방영되었던 미국 TV 시리즈물인 CS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었다는 점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欽欽新書』는 130년 전에 편찬되었지만, 오늘날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수사지침서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하고 해박한 지식을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임했던 다산의 태도를 통

해 다산의 업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서구문명과 서구의 과학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溫故知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1] 오규철, “다산(茶山) 정약용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사상 비교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pp.193-194.

[2] 박석무, 정해림, *역주 欽欽新書 1*, 현대실학사, 1999.

[3] 강혜중, *흠흠신서(欽欽新書)의 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 김충남, *경찰수사론*, 박영사, 2009.

[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8.

[6]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현암사.

[7] http://en.wikipedia.org/wiki/Forensic_science

[8] <http://home.comcast.net/~drdeathmd/doc/>

[9] M. D. Lyman, *Criminal Investigation : The Art and the Science*, Pearson Education, 2005.

[10] 최중현, *현장수사와 신문기술*, 동민출판사, 1994.

[11] Bella M. Depaulo and Wendy L. Morris, *Discerning lies from truths: behavioural cues to deception and indirect pathway of intu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 Charles Lushbaugh, *Criminal Investigation : Basic Perspectives-10th ed.*, Pearson Prentice Hall, 2006.

[13] Vernon J. Geberth,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Taylor & Francis Group, 2006.

[14] 박석무, 정해림, *역주 欽欽新書 3*, 현대실학사, 1999.

[15] Douglas P. Lyle, *Forensics for Dummies*, Wiley Publishing, 2004.

[16] K. Lee Lerner & Brenda Wilmoth Lerner, *World of Forensic Science 1*, Thomson Gale, 2006.

저자 소개

김 은 기(Eun-Kee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사)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 석사)
- 2014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 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